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단18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개명 전 :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변론 종결2016. 1. 13.

판결 선고2016. 2.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최종지분표 중 '원고 주장 상속지분'란 해당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1.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86. 9.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6. 10. 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3 구체적 지분 변동내역표 중 '등기지분'란 해당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중 '등기명의인'란 기재 해당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종중은 P, Q 및 망 R(R, 부동산등기부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한자를 종합하여 보면, 'R'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상속인인 T, U, G, I, H, V, J, K, L, M, N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0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그 당시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위 종중이 W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사망한 W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위 피고들에게 위 소송의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이 사건의 별지5 2008가단50625 상속지분표에 해당)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X은 2010. 7. 7. 별지 최종지분표 중 '확정판결 피고'란 기재 해당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135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8.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이 사건 별지 최종지분표 중 '확정판결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8. 1.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2소송의 청구원인은, O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W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W이 사망하여 2008. 1. 9. 총회결의로 W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종중원인 X,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망 W의 상속인들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X, A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X(X은 2015. 1. 20. 소를 취하하였다)은 제2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인 R 10/100 지분, Y 1/100 지분, Z 1/100 지분, V 6/100 지분이 누락되었고, 확정판결 상속지분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판결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최종지분표 중 '원고 주장 상속지분'란 해당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1.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한 제2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에 미친다 할 것이고, 제2소송 피고 중 1인인 T는 위 확정판결의 무변론판결 선고일(2011. 2. 18.) 이후인 2012. 11. 6.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으로 포괄승계인이 된 그 상속인인 이 사건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에게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R 10/100 지분, Y 1/100 지분, Z 1/100 지분, V 6/100 지분은

제2소송 당시 위 각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제2소송 확정판결에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므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잘못'은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잘못이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6. 자 2012그97 결정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 'Y'의 재산상속인이 그 자녀인 G, I 뿐이라고 오인하여, 또한 등기명의인 'Z'의 재산상속인이 그 형제자매인 G, I 뿐이라고 오인하여 그들만을 상대로 제2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이 1988. 12. 7.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재혼한 처인 AA, 자녀들(자녀들의 모친은 Y의 전처인 AB이다)인 G, I, H, Z이 있었는데, Z은 2007. 9. 3. 사망하였으므로, Y의 최종 상속인들은 G, I 이외에도 그 처인 AA과 자녀 H이 존재한다. 또한 Z이 2007. 9. 3.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은 형제자매인 G, I 이외에도 H이 존재한다(Z은 Y과 전처 AB 사이의 자녀이므로 AA은 Z의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피고 G, I의 상속지분에는 실제 상속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고, 위 확정판결 주문 중 위 상속지분 기재의 오류는 명백하며, 나아가 위 확정판결 주문 중 상속지분을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피고 G, I의 실제 권리지분인 별지2 최종지분표 중 '최종 지분'란 해당 기재 지분으로 경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서 누락된 AA, H에 관하여는 별소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최종 지분표 중 '최종 지분'란 해당 기재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청구도 존재하나 원고는 피고 H의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피고 H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세영

별지